

2001年度
行政監査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財務建設委員會會議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被監査部署 財務局

日 時 2001年11月28日(水) 10時03分

場 所 財務建設委員會室

(10時03分 監査開始)

○委員長 安載弘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무건설위원회 재무국 소관에 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先輩 그리고 同僚 委員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실 여유도 없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좀더 나은 봉사행정에 역점을 기울여서 지난 9월에 미국의 테러 이후에 더욱더 어려워진 실직자 구제 등 서민생활의 안정과 국민의 복지향상을 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고품질, 고효율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내실을 기하여 심도있는 감사로 행정사무감사의 질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를 받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말 효과적으로 답변해서 감사가 소정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있고 심도있는 조사로 재무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의사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소속 수감 관계공

무원의 선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에 의한 선서취지와 처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5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당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董連浩 財務局長이 대표로 선서하시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起立)

○財務局長 董連浩 “宣誓.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8일

財務局

財務局長 董連浩

財務課長 趙秀完

稅務1課長 趙朝翼

稅務2課長 徐明一

地籍課長 徐燦奎

○委員長 安載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一同 着席)

재무국장께서는 서약서를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안녕하세요? 財務局長 董連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저희 재무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趙秀完 財務課長입니다.

趙朝翼 稅務1課長입니다.

徐明一 稅務2課長입니다.

徐燦奎 地籍課長입니다.

(간부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安載弘 委員長님! 吳弼根 幹事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제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저희 재무국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照)

財務局 業務報告

(財務局)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委員長 安載弘 董連浩 財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재무국 감사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의회의규칙 제5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玄壽漢委員! 질의하십시오.

○玄壽漢委員 玄壽漢委員입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여쭙습니다.

다. 어느 공사를 입찰하면 업자가 선정되고 그럼 공사가 시작되죠. 그럼 설계변경이 1차, 2차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입찰을 합니까? 왜냐하면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비가 늘고 줄고 그러는데 그런 게 어떻게 처리되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모든 공사에 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공사의 경우에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이루어진 설계변경은 주관부서 그러니까 공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특별한 사유를 담은 설계변경의 방침을 정하게되면 별도의 입찰과정 없이 처음에 낙찰된 사람과 설계변경된 내용에 의해 가지고 다시 추가가 되는 겁니다.

○玄壽漢委員 그러니까 말은 부서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가 증액이 되든 줄든 그 부서에서 책임을 진다 이거죠? 그런데 재무국은 입찰만 끝나면 주무부서에서 공사를 하기에 달렸다는 말 인가요?

○財務局長 董連浩 전적으로 설계변경이 늘어나거나 줄게되는 경우의 업무는 주관부서에서 주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玄壽漢委員 하자발생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검토해야 되겠군요?

○財務局長 董連浩 그렇습니다.

○玄壽漢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玄壽漢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吳錦南委員! 질의하십시오.

○吳錦南委員 吳錦南委員입니다. 지방세 세목별로 해서 체납액 현황이 9월말 현재까지 나와있습니다. 설명은 물론 들었습니다만 시세는 저희 구에서 받게되면 얼마에 인센티브가 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징수교부금의 3%를 받게 됩니다.

○吳錦南委員 현재 이 자료를 보면 우리 구세는 그래도 체납액이 상당히 낮은 편인데 시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우리 세무과의 담당자 분들이 교부금조로 나오는 그 3%가 낮아서 성의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

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지방세 소위 말해서 구세나 시세를 징수하는 저희 세무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구세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는 그런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세에 비해서 시세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그 세목이 불가피하게 체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체납지방세 중의 하나가 주민세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과거에 주민세를 부과하는 과정이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국세의 10%를 주민세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할의 경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세무서에서 저희 구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기간이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기간 이후에 과세자료를 통보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늦게 통보해온 그 과세자료에 의해 가지고 소득할을 부과했을 경우에는 부과할 그 시점에는 이미 납세의무자는 도산하거나 타지로 옮겨져 가지고 징수가 곤란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도심에 위치한 저희 종로구의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더욱 빈번합니다. 그래서 구세보다 시세가 체납액이 더 많아진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고 조금전 우리 吳錦南委員님께서 걱정하셨습니다만 추후도 구세니까 열과 성을 다하고 시세니까 좀 느슨하게 대처를 하는 그런 일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吳錦南委員** 시세를 보면 8~9개 정도가 되는데 주민세에 대해서 키포인트를 잡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관할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난 후에 많은 시간이 경과된 후에 그 10%에 대한 것이 우리 구로 넘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걸 발부하다 보면 시간차가 많아서 도산이나 기타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가까이에서 시간을 쬐힐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5월 1일부터는 세무서에서 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각종 지방세 10%를 부과하는 세목에 대해서는 국세를 발급함과 동시에 지

방세, 주민세 고지서를 동시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 지방세, 주민세 징수 실적이 과거보다는 더 많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400억 이상의 체납 현황을 볼 때 그런 제도가 좀 빨리 되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징수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체납의 현황을 보면 이것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의 요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만 보더라도 우리 종로구의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한 40억 정도가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나 이런 지방세 체납을 더 성의 있게 거둬들이면 이러한 세외수입의 체납액이나 지방세 체납이 적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우선 또 세외수입의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왜 이런 결과가 생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구청의 많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우리 지방세를 관리하는 그런 부서의 직원들보다는 세외수입에 대한 전문성이 약간 부족하므로 업무 추진을 하는데 조금 문제가 없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체납된 세외수입 항목 중에서 이를테면 예를 들어 소액의 광고물과태료라든지 주차 위반과태료, 아니면 지역에서 거둬들이는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아주 소액이고 실질적으로 체납된 것을 징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국에서는 관계되는 직원들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나가는 것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관리자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주기적으로 평가보고회를 개최해서 관심을 촉구해서 세외수입 징수를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실제로 하나 하나 각 부서별로 볼 때는 얼마 안 되는데 총계로 모아보면 200억 돈이 되니까 종합적인 합계로 보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도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吳錦南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李炯述委員님! 질의하세요.

○李炯述委員 李炯述委員입니다. 우리 종로관내의 모든 공사발주를 재무국에서 주관하고 있죠?

○財務局長 董連浩 그렇습니다.

○李炯述委員 일단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소관부서에서 감독을 하고 있지만 마지막 잔금을 지불할 때 그 부분도 역시 재무국에서 지불하게 되지요?

○財務局長 董連浩 그렇습니다.

○李炯述委員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어느 동청사를 계약했을 때 그 공사를 하청하고 또 재하청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길 또 하청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는 당연히 부실공사가 됩니다. 그런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공사가 애초에 제시된 사양대로 됐는지 안됐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사를 발주한 부서에서 감독을 해야될 사항으로 사료되고 그게 하청이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만 하도급을 줬는지 안 줬는지의 여부도 주관부서에서 그걸 챙겨서 감독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李炯述委員 하도급을 일단 계약한 수주회사가 부분부분 하도급을 주는 경우는 관행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을 맡은 사람이 또 자기가 받아 가지고 다시 하도급을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넘어갔을 때는 그 공사금액이 도중에 마진을 챙기고 자기는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면 이 공사는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걸 어느 부서에서 감독합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어느 특정부분에서 도급을 줘야겠다 라는 의사결정을 해서 거기에 의해 가지고 회

계부서에서 그걸 관장하지 저희 회계부서에서 도급을 줬는지 안 줬는지의 여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도급을 줘서는 안 되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가지고 도급을 주지 않는 그런 공사가 있었다면 공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잘못된 사례를 적발해서 저희 회계부서로 통보를 하면 관계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향후에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그런 벌칙을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원칙적으로 계약을 발주 받으면 일단 부분부분 하도급을 줄 수 있는지, 그 다음 하도급을 몇년전에 우리 의원들이 감사나갔을 때 어느 공원에 실질금액은 5,000만원인데 마지막 공사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천 몇백만원에 공사한다고, 그 과정이 두세 차례 넘어가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에게 하도급을 줘야지 그 사람이 챙기고 또 다른 사람이 하고 그러다 보니 실질 공사하는 사람은 5,000만원짜리 공사를 천 몇백만원에 공사하면 그거 날림공사가 되고 부실공사가 된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듣기로 어느 종로관내에 공사하는데 하도급 해가지고 다음에 또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도급 한 사람이 그대로 공사를 해야 될텐데 그 사람이 마진을 다 챙기고 다음으로 넘겨주면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지금 종로구청 입장에서는 계약한 파트에서는 거기다 떠넘기고 그쪽에서는 다른 데 떠넘기고 그러다 보니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고 공사는 부실공사가 된다 이러한 부분에 좀 계약을 수주할 때 조금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챙기면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나오면 일단 공사 끝나고 난 뒤에 하자보증금 떼기 전에 일단 잔금이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공사는 다 했다 해가지고 그대로 담당 감독한 부서에서는 도장 찍어 올라오더라도 두 번, 세 번, 네 번 하도급한 부분이 있으면 그 공사는 어느 부분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종로에 확인한 곳이 있습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李炯述委員님께서 부실공사

를 우려한 하도급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대상지를 말씀하시면 그것을 주관부서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해서 문제점을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李炯述委員 제가 말씀을 드리죠. 원서동에 마을회관을 짓는데 지금 소장이 자기가 맡은 것은 세번째 하도급을 맡았다는 얘깁니다. 주민들 얘기가 공사가 제대로 진전이 안되고 12월말에 준공한다는 게 지금 현재도 공사 진척이 잘 안돼요. 11월말에 준공하겠다고 한 것이 금년 중에 준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재하청 시키고 다른 사람 들어오고 그러니까 공사 진전이 안되죠. 이러한 것이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종로관내에 많이 있을 것이다. 이래 가지고는 우리 행정을 맡은 집행부가 감시감독이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계약 주무부서인 재무국에서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깊이 좀 계재를 해주시면 그런 사례가 줄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부연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하도급은 규정상 허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하도급 한 번이지. 두 번, 세 번, 네 번

○財務局長 董連浩 만일에 규정에 잘못된 하도급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전에 지적하신 원서동 마을회관 건립 관련해 가지고는 별도로 제가 챙겨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향후에 모든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잘못된 하도급이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사를 관리하는 전 부서에 대해서 별도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炯述委員 또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돼 가지고 하자가 중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 일괄적으로 잔금 하자금을 일정 비율 떼어놓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차등을 두어 하자보증을 떼는 겁니까? 물이

○財務局長 董連浩 적용되는 프로테이지는 같습

니다.

○李炯述委員 지금 가회동길에 소나무 한 그루에 400만원 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두 그루가 죽었습니다. 두 그루만 저래도 하자금액이 해당될 거예요. 그렇죠? 가상이 저래 가지고 나무같은 경우는 잘 죽습니다. 금액이 높은 저것도 이것을 일정 비율로 해가지고 10%씩 떼어놓으면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을 해주시죠.

○財務局長 董連浩 만일에 하자보증금에 의해서 하자를 치유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도로 하자보수 보증금에 의해서 치유할 수 없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절차에 의해서 하자부분을 보수를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그런데 하자금을 적게 일괄적으로 정해 가지고 10%면 10% 똑같은 금액을 하자금을 떼고 잔금을 다 썼을 때 나무같은 경우는 2년 안에 죽을 확률이 많습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가회동길의 소나무의 경우는 비적용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비율은 일정하다 하더라도 소나무를 구입하는 단가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에 의해 가지고 확보된 하자보수보증금에 의해서도 고사된 소나무를 보식을 해야 되고 만약에 하자보수보증금에 의해서 보식이 안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에 의해 가지고 보식이 하자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생겼다면 보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李炯述委員 지금까지 우리 종로관내에 수목을 식재를 해가지고 심고 난 뒤에 시간이 흘러가면 누가 일단 지적은 할망정 그렇게 저것은 안합니다. 산에 가 가지고 수목을 많이 심어놨을 때 죽고 나면 의원들이 가서 왜 이렇게 해놨냐 해도 그 다음에 가도 그 장소에 나무를 심는 일이 없습니다. 지난 근 12년 동안 수없이 지적을 해도 본 위원이 가봐도 거기에 죽은 나무에다 다시 공원에 심어놓은 것을 못봤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가 좀 부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점을 챙겨 주시고 지금 국장님이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 21쪽에 보면 지방세 부과 징수실적 해가

지고 102%, 101%, 103%, 20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애초부터 금액을 낮게 책정해서 어떻게 100% 넘게 실적이 나오니까? 뭔가 책정할 때 생각 없이 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죠.

○**財務局長 董連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대전제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목별로 해당년도의 목표액을 선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을 다 고려를 합니다. 우선에 전년도에 징수실적 또 금년도에 우리 관내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변화와 또 그런 적용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마는 세목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제가 보고를 못 드립니다. 마는 아무튼 여러 가지 다 고려를 해서 그 요인에 의해 가지고 목표액을 전년도보다 상향조정하든지 하향조정하든지 하지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조건 하향조정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자의에 의해 가지고 부과해야 될 것을 부과 안한다든지 안해야 될 것을 부과해야 한다든지 그런 일이 결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목표액 산정에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시된 예상결산율이 21쪽에 제시된 금년도의 예상되는 징수율이 100%를 약간 상회하는 것도 있고 또 미달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마는 이것은 10월말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한다면 이러한 목표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수치를 계상해놓은 점을 유의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李炯述委員** 본 위원은 납득이 잘 안갑니다. 안가는 것이 애초부터 아주 낮게 책정을 해놨기에 100%가 넘지 목표실적이 100% 넘어서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기준치 잡아 가지고 설정을 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참 납득이 안갑니다. 이것은 충분히 국장님 답으로 대신하고 지적과에 종로구민들 많은 구민들이 아마 우리 구청에 인사 받는 것은 지적과를 통해서 인사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오면 바로 떼주고 해서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이 저래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으려면 주민들의 등기업무는 법원을 가지 않습니다. 지적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 물론 법으로 여기서는 법으로 국회 통과되어야 할 문제지만 종로구청이 좀 앞장서 가지고 대한민국 정치일번지고 어느 구청보다 앞서가는 구청같으면 시범 종로구청이 돼서 가옥을 팔고 사는 사람들이 사법서사를 가지 않고 법무사를 가지 않고 우리 지적과에 와서 모든 업무를 거의 70~80%가 우리 종로구청에서 서류를 다 떼어 가지고 가니까 글자만 밑에 집어넣으면 등기업무가 아주 편합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앞장서 가지고 관계부처에 얘기해서 종로가 시범지구로 해서 1, 2년 해보고 난 뒤에 등기업무를 종로구청 지적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는지 국장님 소신을 밝혀주시죠.

○**財務局長 董連浩** 지금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등기업무를 구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마는 그 말씀은 금년 5월달에 安載弘 委員長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이것을 좀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에 다각도로 접촉을 하고 공문도 보내보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를 우선에 구에서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를 법원행정처에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법원행정처에서 답변은 등기부등본 자동발매기 그게 약 한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에 이르는 기계값이 그러한 것을 종로구에서 구비로 설치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 또 각종 자재비, 기계운영비도 종로구에서 부담을 하고 거기에서 생기는 등기부등본 수수료는 법원행정처로 내고

○**李炯述委員** 다른 위원들이 궁금한 것을 질의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좀 짧게 좀 합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그래서 결코 그런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등기부등본 자동발매기를 우리 구에 설치해서 민원편의를 도모하는 데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향후에는

여러 가지 조건을 원만하게 법원행정처에서 제시를 해서 이룰테면 등기부등본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발급기관에서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거기에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자체비를 지원한다든지

○李炯述委員 됐습니다. 답은 그쯤 하면 됐고 지적과장님! 답 좀 해주시죠. 우리 주민들이 집을 팔든지 전세, 월세 계약할 때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조례로 딱 정해진 금액이 있죠? 조례로 정해진 금액보다도 과다하게 징수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점검하고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지금 만약에 30억에 집을 팔았다고 했을 때 수수료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죠.

○地籍課長 徐燦奎 6억원 이상 거래가는 중개수수료율이 0.2 ~ 0.5 사이의 중개업자간 상호 계약에 의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전세 1억짜리면 얼마에 금액이 되어 있습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전세 1억이면 0.3%입니다.

○李炯述委員 그러면 얼마입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30만원입니다.

○李炯述委員 확인하고 있습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확인하고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0.3%로 30만원이면 한 가구에 들어오는 사람 60만원, 나가는 사람 60만원 해서 120만원을 받아요. 확인 못해보셨어요?

○地籍課長 徐燦奎 저희가 올해도 봄, 가을 이사철에는 특별단속을 실시했었습니다.

○李炯述委員 본 위원이 이러한 부분을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들이 부동산 하는 분들이 참 이웃간에 많은 세월동안 대화로 금액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액을 지불하고는 본 위원한테 온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시에 물어봤더니 30만원인데 양쪽에 60씩 120을 받아갔다. 이것을 달라고 하지도 못하고 이것을 구청에서는 담당부서에서는 교육을 잘 시켜줘야 될 것이 아니냐, 주민들간에 이웃간에 어려움을 주는 것을 구행정이 종로가 주민을 위한 최고가는 종로구청이라고 그

러는데 많은 주민들이 이런 이웃간에 어려움이 오는 것을 지적과에서는 부동산중개업소를 불러서 두 달이면 두 달, 한 달이면 한 달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웃간에 불편이 없도록 계도를 해주는 것이 종로구민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도 좀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李炯述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원서지구 내 마을회관 공사로 해가지고 하도급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자치구에서 하는 공사는 굉장히 하도급이 많은데 이게 관리가 잘 안되고 제대로 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이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서지구 내 마을회관 공사하고 계약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재무과장님!

○財務課長 趙秀完 예.

○委員長 安載弘 그러시면 계약내용에 대한 공사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대장이 있죠? 공사대장을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고 공사가 진행중이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모르겠으나 기성청구조서가 있을 거라구요. 그것이 있으면 그것을 두 가지를 위원님들한테 李炯述委員님한테 갖다 드리도록 해주십시오.

○財務課長 趙秀完 준비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준비해서 주십시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金福同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福同委員 金福同委員입니다. 20쪽을 봐주십시오. 2001년 국유지 재정경제부 소관 현황해서 많은 국유지를 매각했죠?

○財務局長 董連浩 국유지 말씀이십니까? 예.

○金福同委員 국유지인데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각이 된 것입니까? 현시가

○財務局長 董連浩 아닙니다. 2개 기관 이상이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액을 산술평균해서 그것을 매각대금으로 삼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감정평가사들은 대충 몇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1명이 감정해서 평가했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2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그렇다면 여기에 붙여서 감정평가사 누구, 누가 감정평가를 했다고 하는 표시가 있었으면 하는데 빠졌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유지 매각이 여러 건이 이루어졌는데 어떤 특정한 매각 위치를 말씀하시면

○**金福同委員** 그 다음에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싼 가격에 매각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20쪽에 종로구청장 해서 419.3㎡를 매각한 것이 있죠? 이것이 됩니까? 용도가. 종로구청장이 뭐를 매각했다는 거예요?

○**財務局長 董連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신3동사무소가 소재한 위치가 주변의 아파트와 합해가지고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구 창신3동사무소가 위치한 부지가 국유지였습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저희 구청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재건축조합에 같이 참여를 해서 추진한 업무중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그러면 주위에 구수입으로 얼마입니까? 8,246만 2,000원입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예.

○**金福同委員** 용도가 구수입이라는 것이 됩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이것은 국유지를 저희가 매각을 하면 위탁관리수수료가 있습니다. 일부는 국가에다 주고 나머지 8,200만원은 구수입으로 다시 들어왔다는 그 말씀입니다.

○**金福同委員** 구수입으로 하면 우리 구청 살림살이를 장만하고 사는데 여기서도 세금을 해가지고 다시 구수입을 해야 되겠느냐 이러한 애깁니다. 그렇죠?

○**財務局長 董連浩** 이것은 아까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국유지를 팔므로 인해 가지고 저희한테 떨어지는 위탁관리수수료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해서 저희 구세입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뒷장에 21쪽에 보면 본 위원 동네

에 연지동 136-61 13㎡를 매각한 것이 있죠? 금액이 얼마입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50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왜 이렇게 싸게 매각이 됩니까? 이 토지가 얼마씩 나갑니까? 국장께서 특혜를 주신 것 아닙니까? 이 분들에게. 태호공산에게 특혜 주셨죠?

○**財務局長 董連浩** 결코 그런 일이 없음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金福同委員** 그래요? 다행이네요. 이러한 일을 하실 때 물론 우리 董連浩局長께서 상세하게 잘 챙기고 잘 하시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우리 종로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 董連浩 財務局長께서 불철주야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 관계공무원 및 과장, 계장 담당공무원들 세원발굴을 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현황 및 사유 해가지고 39페이지를 한 번 보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 董連浩局長께서 수의계약은 전혀 없고 투명성을 제고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지난해 2000년도에도 수의계약을 많이 했네요?

○**財務局長 董連浩** 많이 했습니다.

○**金福同委員** 그러면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할 때는 수의계약이 없다고 했는데 보면 수의계약을 이처럼 많이 했는데 없다고 했습니까? 종로구청에서는 수의계약을 전혀 안한다고 했잖아요?

○**財務局長 董連浩** 지금 유인물 39쪽에 제시된 수의계약 현황은 2000년도에 했던 수의계약 실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金福同委員** 그러면 4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도 2000년도 것입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39쪽에 나와있는 수의계약은 비교적 금액이 좀 많은 그런 것도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1억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5월부터는 3,000만원 이상은 소액공사 수의공개경쟁을 하도록 그렇게 돼서 3,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은 3,000만원 미만의 경우만 수의계약이 된 것이고 이러한 사례를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 12월 1일부터는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은 전자수의계약을 실시하고 또 공사나 용역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은 모조리 전자수의계약에 의해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을 아까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 40쪽에 나와 있는 수의계약 현황은 3,000만원 미만의 공사로서 현재 규정상 수의계약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된 것임을 참고로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金福同委員** 존경하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수의계약도 투명성있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지만 조그만 물품 몇 가지를 몇 백 단위의 물품을 사고 팔고 하는 구매상의 절차상 문제라는 거죠.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민원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럼에도 수의계약이라는 태두리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알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현금 가지고 바로 사서 넘기면 단 500만원이라든가 1,000만원 미만은 바로바로 처리하게 되면 종로구민들이 그만큼 시간상으로 이익을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의계약이라는 태두리에 묶여있기 때문에 할 일을 제대로 못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그래서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갖게 되는 장·단점,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갖게 되는 장·단점 다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金福同委員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소액의 경우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수의계약 하는 것이 훨씬 양질의 물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3,000만원 미만까지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향후 12월 1일부터 전자수의계약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전자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빠릅니

까? 일 처리가.

○**財務局長 董連浩** 꼭 빠른 것이 아니라 종전의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견적서를 수의계약하고자 하는 물품이나 공사나 용역발주를 함에 있어서 견적서를 주관부서 임의대로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낙찰 대상으로 삼았습니다마는 전자로 할 경우에는 그것을 인터넷에 올리기 때문에 어느 특정업체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업체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견적을 제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계약 자체가 투명하게 되고 또 어쩌면 값싼 좋은 물품 양질의 물품을 적은 가액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잇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金福同委員** 본 위원이 우리 지역 동청사를 짓는 문제 때문에 입찰가격과 현찰로 직접 제품을 구입하는 것과 대조를 해봤습니다. 입찰이란 제도가 좋은 점도 있겠지만 좋지 못한 점도 있어요. 우리 국장께서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1,000만원 정도의 이런 금액을 사용할 때에는 입찰을 하지 말고 수의계약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잠깐만이요. 전문위원한테委員長이 한마디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董連浩局長 답변하는 중에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것과 관련지어서 예를 하나 들어주면 그 감정된 내용과 매각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했으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연지동 136-61, 62, 33.3㎡을 6,050만원에 매각한 거 하고 그 감정평가가사 있으시면 그 계약된 내용이 있으시면 그 사본을 좀 보내주세요.

○**財務局長 董連浩** 곧 준비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위원님들 보시면 아까 金福同委員님께서 질의에 절대로 특혜를 준 게 아니라고 그러셨으니까 한번 봅시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네. 丁炳煥委員님! 질의하십시오.

○**丁炳煥委員** 丁炳煥委員입니다. 보고자료 17쪽입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간소화에 대해서 李炯述委員님과 金福同委員님께서 방금 질의한 사항입니다. 2000년도 공개경쟁입찰 실적이

117건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 117건 응찰에 종로관내에는 한 번도 없어요. 전 부 타지역이에요. 그런데 종로관내는 업자가 없어서 응찰을 안 했습니까? 아니면 답합에 의해서 타지역으로 이걸 낙찰시키려고 했는지 본 위원은 그것이 상당히 궁금하고 또한 종로관내 업자가 아니더라도 수의계약 3,000만원 이하라도 종로 사람을 종로공사에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해야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 건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유인물 17쪽에 제시된 117건의 공개경쟁 실적에 우연히도 종로구에 소재한 업체가 없는 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행규정상 입찰자격을 제시함에 있어서 업체가 종로구 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로관내 소재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고를 하거나 해서 업체 선정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생긴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丁炳煥委員** 본 위원 생각은 종로의 업체만 선정한다면 공정거래위반으로 생각되는데 그러한 건이라도 응찰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응찰자는 많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만

○**丁炳煥委員** 그럼 낙찰계약이 한 건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여기 공개경쟁 117건 이외에 금년도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종로에 소재한 업체가 수의계약의 계약당사자로 한 그러한 계약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丁炳煥委員** 수의계약은 많이 있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지금 정확하게 몇 건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더러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丁炳煥委員** 입찰에 의해서 낙찰된 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수의계약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 위원도 수의계약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앞으로 기

왕이면 우리 종로관내에 거주하는 종로의 모든 공사에 입찰을 하게끔 건의를 해주십시오.

○**財務局長 董連浩** 알겠습니다. 규정된 범위 내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리고 27쪽 체납지방세 추진실적이 9월 30일 됐는데 불납결손이 1,719건에 9억 7,800만원인데 불납결손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불납이 된 겁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결손이란 것은 부과된 세금을 받을 수가 없을 때 과세 그 자체를 없는 것으로 하는 게 결손이 되겠습니다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5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세금이 결손되는 걸 시효결손이라고 하고 불납결손이라고 하는 것은 5년의 시효가 경과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그러한 경우에는 결손시키는 걸 불납결손이라고 합니다.

○**丁炳煥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납세의무자가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과세는 시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재산이 있고 없고의 유무가 과세의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丁炳煥委員** 어차피 무슨 소득에 의해서 과세를 했을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그런데 부과된 세목이 여러 가지로 아주 많기 때문에 반드시 소득이 있다고 해서 과세되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주민세 같은 경우는 소액입니다만 6,000인데 그건 소득이 있고 없고의 유무를 떠나서 종로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보유한 사람은 자동차세를 내게 되어 있고 해서 세목에 따라서 적용되는 의미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고 없고의 유무가 세금을 부과하고 안 하고의 유무하고는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丁炳煥委員**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과세를 할 때는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했는데 재산이 있는 것도 모르고 불납을 했더니 이해가 안 가고 두번째 시효결손이 4,084건에 5억 5,700만원인데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과세를 해가지고 5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시효결손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기초조사자료에 의하면 '96년도 이전 약 7~8년 된 것도 지금 부과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만 시효결손을 하고 있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면 우선 납기일을 정해서 과세를 합니다. 과세를 해서 납기일 내에 안 내면 일정기간 이후에 독촉장을 보내고 또 재산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독촉을 해서 일정기간 이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에다 압류를 하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압류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산 압류를 못한 경우가,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5년간 계속됐을 경우에는 그것이 시효결손의 대상이 되겠고 재산이 있는 경우라도 압류된 재산을 다른 제3의 기관에서 먼저 압류해서 저희 구에서 징수할 수 있는 순위가 후순위가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돌아오는 배당금이 적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불납결손이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모든 구세가 과세돼 가지고 5년이 경과되면 전부 시효결손하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압류할 재산도 없고 현재 낼 능력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5년이 경과되면 시효결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세액이 얼마 되지 않는 거를 현지 답사 한번 않고, 확인도 않고 부과만 해가지고 독촉장만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탁상행정을 하지 마시고 직접 현장에 가서 체납된 것은 방문토록 부탁드립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알겠습니다.

○**丁炳煥委員** 다음 33쪽 건전한 부동산 거리질서 확립에 대해서 2001년 추진실적 적발 및 행정조치 90회라고 했는데 등록취소하는 것은 공인중개사가 영업하는 것도 취소된 거 있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여기에서 추진실적 행정조치

90건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조치 사항입니다.

○**丁炳煥委員**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일정한 영업장소에서 등록취소를 당하면 명의는 취소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분이 인근에서 영업장소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자격취소는 아닙니다.

○**丁炳煥委員** 아니 그러니까 A라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다가 영업정지가 되면 B라는 장소에다 영업장소 허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일정한 요건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고 자격취소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자격등록 취소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 등록취소를 5건이나 했습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무단폐업이라던가 중개업자가 사망하는 이런 것을 폐업시켰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리고 아까 李炯述委員님과 金福同委員님이 질의했습니다만 부동산소개료가 1억 이상일 경우에는 0.3%인가 받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 지적과장님이 일일이 504개 부동산을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부동산에서 그 이상의 소개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地籍課長 徐燦奎** 그래서 올해도 부동산중계를 이사철에 특별단속을 했고 내년에도 홍보를 철저히 하고 부동산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을 사전에 예방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리고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2001년 12월 29일부터 2002년 2월 26일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요?

○**地籍課長 徐燦奎** 그렇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런데 현지를 답사하고 심의를 합니까? 앉아서 이의신청만 가지고 심의를 합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아닙니다. 이것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현장답사도 하고 저희 직원도 나가지만 평가사들이 나가서 답사도 하고 현장거래 가격도 조사를 하면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

다.

○**丁炳煥委員**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도 본인이 상향조정을 이의신청한 것은 공시지가 등급이 월등히 높고 본인이 이의신청을 안한 것은 낮고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무악동 같은 경우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데 공시지가가 높은 사람은 엄청나게 이익을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똑같은 수준에서 똑같은 등급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2002년도에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재개발사업지구는 상향조정하는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평가를 높이 받아서 자기들에게 배정되는 평가를 높이 받아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향조정을 요청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전부 다 공시지가란 것은 그 지역 전체를 봐서 공정하게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제가 우리 무악동을 일일이 지가확인을 했습니다만 높아야 할 땅은 낮고 낮아야 할 땅은 높고 천태만상입니다. 이걸 조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그것도 조정해서 지가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은 저희가 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집은 등급을 높인 데가 있습니다. 어떤 집은 그대로 이의신청을 안 하면 낮고 그 분들이 만약에 재건축을 하면 엄청나게 불이익을 봅니다. 그러니 재개발지구나 재건축지구는 이의신청을 하나 안 하나 그 지역을 기초조사를 해서 똑같은 등급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地籍課長 徐燦奎** 네.

○**丁炳煥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丁炳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金福同委員님! 질의하십시오.

○**金福同委員** 金福同委員입니다. 우리 지적과장님이 종로구청의 살림살이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내가 안타까운 것이 있어서 지적합니다. 앞으로 길이 난다든가 공사를 해야 될 예산이 되어 있는 곳의 공시지가가 자꾸 내려가는 이유가 됩니까? 그렇게 해야 종로구청이 이득입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공시지가란 것이 지금까지 공정하게 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왜 길이 뚫린 곳이 더 내려가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도시계획도로에 저축이 되거나 하는 것은 현지 지가의 85%를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땅값이 100원이라면 도시계획선에 포함된 것은 몇%로 하라 또 도로는 몇%, 공원은 몇%로 하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그렇다면 2년 전에는 1만원 가던 지가가 길이 날 때는 8,000원으로 떨어졌더라 말입니다. 이걸 의도적인 거 아닙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아닙니다. 공시지가는 저희 직원들도 조사를 하지만 감정평가기관에서 나가서 조사를 해서

○**金福同委員**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내게되면 더 올려주고 말이에요.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합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그렇지 않습니다.

○**金福同委員** 그럴리가 없다고 봅시다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어김없이 도로가 날 지역의 공시지가가 내려가는 걸 많이 봤어요. 의도적으로 徐課長님께서 앞으로 국장이 되려고 내리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어요?

○**地籍課長 徐燦奎** 지적과장 마음대로 공시지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평가기관에 감정의뢰를 해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공시지가를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고 부동산 판매가격 중계료 받는 일 이게 천태만상이에요. 법적으로 받는 것 이외에 2~3배 더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이걸 싸게 사게 해주면 내가 얼마를 준다. 가계약이 돼 가지고 뒷거래가 있다는 걸 아시죠?

○財務局長 董連浩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부동산 중개인들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각종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저희 구청의 담당 공무원이 입회를 해가지고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킬 수는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약당사자와 부동산 중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것을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지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金福同委員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대화하는데 국장님이 왜 갑자기

○財務局長 董連浩 죄송합니다.

○金福同委員 제가 한 수를 가르쳐드린다면 부동산이 사고 팔고 해서 매각돼서 넘어간 뒤에 뒷처리 조사를 하세요. 해서 과연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고 정당한 가격에 사고 팔고 했나, 또 아니면 별도 챙길 건 챙겨서 우리가 세원 발굴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시킨다면 그런 제도가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地籍課長 徐燦奎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후에 처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홍보에 주력하고자 하고 또 내년에는 분기별로 부동산 중계업자들 교육도 좀 시키고 사전에 간담회도 하고 주민들이 부동산 요율표를 실질적으로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거래가 된 분들에게 설문서를 내세요. 우리 구청에서 귀하가 우리 지역의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양심껏 해주시오 하고 해서 부동산 총 가격은 얼마고 복비는 얼마인지 하는 이런 내용을 받아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고생하지 않고 알아내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보면 무자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자격자는 중개사 한 사람당 세명까지 쓰게되어 있습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제한이 없고 중개사는 자기

도장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중계보조원을 10명을 두던 20명을 두던 그 사람들은 절대로 거래에 도장을 찍을 수는 없습니다.

○金福同委員 도장을 찍을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매각을 할 때 사고 팔고 하는 과정은 그 사람들한테 이루어집니다. 알고 계시지요? 불법으로 그 사람들이 대행할 수 있도록 만든단 말입니다. 나중에 공인중개사가 도장만 딱 찍는 거지. 이런 걸 철저히 채겨주시기 바랍니다.

○地籍課長 徐燦奎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金福同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다가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경우가 있으시면委員長한테 양해를 구하시기 바라고 역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려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玄壽漢委員님! 질의하세요.

○玄壽漢委員 玄壽漢委員입니다. 지적과장님! 기술적이죠?

○地籍課長 徐燦奎 그렇습니다.

○玄壽漢委員 우리나라 토지에 지목이 있죠? 임야나 농지, 나대지. 혹시 우리나라에 언제 그게 생겼어요?

○地籍課長 徐燦奎 '10년도 토지조사 당시에 처음에 11개 지목부터 출발했다가 25개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玄壽漢委員 우리 종로구가 가장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지는 지방이나 서울이나 농지로 되어 있는 지목은 200평 이상은 농지위원회 증명을 받아야 되나요?

○地籍課長 徐燦奎 토지거래를 할 때 농지법에서 농지인 경우에는 농사를 짓고자 하는 사람만이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정해놨습니다.

○玄壽漢委員 그게 서울이나 지방이나 마찬가지로 예요?

○地籍課長 徐燦奎 그렇습니다.

○玄壽漢委員 그럼 우리 종로구에 농경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일부 산밭에 조금은 있습니다.

○玄壽漢委員 아니 야채 조금 심어먹는 거야 집 앞마당에도 심어먹지.

○地籍課長 徐燦奎 그런 거 외에는 없습니다.

○玄壽漢委員 우리 세검정지역이 전체가 옛날 과수원이었거든. 그래서 지목이 전부 전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집을 지었어. 그 집을 팔려니까 대지면적이 200평이 넘는 것은 농지매매증명 그걸 해오라고 그러니까 서울도심이니까 종로구에 농지 없어진지가 몇십 년 됐습니까? 없지요. 해줄 사람이 없어요. 동장이 해주려고 하고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지적과에서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낼 때 몰라요 지방은 산업과라고 그러고 우리는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거 해와라 하고 승인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 200평 이상 대지면적에서 옛날부터 집을 짓고 살았다고. 그 집을 팔려니까 이게 매매가 안 되는 거야. 그런 건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하실 거예요? 우리 종로구, 서울 전체를 생각해서. 서울 변두리 25개구 중에서 아직 농지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종로구 관할하는 세무서들이 광화문세무서, 효제세무서 등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세무서 직원도 젊은 층들은 종로구가 농지가 있느냐 이거야. 지목이 전인 게 아직도 있느냐?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트집을 잡는 게 그 민원이, 저는 세검정 살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관할하는 동장도 어떻게 할 재간이 없고 농지일리도 없고 그래서 지적을 담당하시는 분하고 행정을 책임지시는 우리 국장님이 그건 정책적으로 해결을 보고 연구하셔야겠지만 지적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살고 있는 이게 전이다 하는 생각을 모르고 있다가 팔려다 보니까 그게 전으로 되어 있으니까 토지허가를 우리 구청에서 안 해주는 거야.

○地籍課長 徐燦奎 허가를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실제 농지지목인 전, 담으로 있는 것들이 실제상

황은 건축물이나 다른 지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각 개별필지별로 지금 현실법에 맞게끔 지목변경이라든지 형질변경허가를 득해서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농지지목으로 사용하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각 필지별로 개별사항에 맞게끔 처리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玄壽漢委員 왜냐하면 거기 현실에 맞게끔 현지에 나가서 조사하고 뭐 한다 하시지만 농지매매 때마다 지적과에서 오래지, 지역경제과에서 오래지, 안 해주고 이게 안 맞는다 이 얘기지. 그러면 그게 몇달간 왔다갔다 하고 고생을 하니까 우리 종로구는 서울시든 그런 부당한 행정지침은 개정돼야 할 것은 시정을 해서 고쳐야될 거 아냐? 지금 종로바닥을 다 돌아다녀도 북한산 거기에 배추 심어먹고 과 심어먹고 그런 건 정원에 조금 있을 뿐이지 농사짓는 농토는 하나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걸 적용해서 그런 걸 소유한 사람들에게 시간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주니까 이걸 어떻게 시정할 또 어느 법규를 개정할 이럴 용의가 없느냐고, 지금 기술직이니까 과장님께 행정상의 문제니까 국장님께 이야기를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위원님! 질문내용이 소유권이 전등기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소유권이전이 안 되는 농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이전이 안 되는 농지에 대해서 그 대책을 내보라 그런 말씀이죠?

○玄壽漢委員 그러니까 농지매매증명이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

○地籍課長 徐燦奎 농지취득자격증명

○委員長 安載弘 아니, 그러니까 그린벨트 내에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유롭지 않지만 그린벨트 이외의 지역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유롭잖아요. 그린벨트 안에서 300평 이상 되는 땅을 매매할 때만 소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면 되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그겁니

다.

○地籍課長 徐燦奎 지금 개별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무단 형질변경을 했거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 어려운 토지들이 가끔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숙제를 푸는 수밖에 없다.

○玄壽漢委員 아니, 그런데 지적과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뭐 그런 것을 농지위원들한테 하라니 동네별 농지위원이 없어요. 경기도에 가니까 거기에는 농지위원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 위원이 농지위원 자격을 대신해. 그 사람들이 찍어주면 면단위 심사위원회에서 그걸 허가를 해주는데 얼마 전에도 전화를 받은 게 집을 팔았다 이거야. 자기는 대지인줄 알았더니 몇 십년 살았는데 이것이 전으로 되어있으니까 농지위원회 증명을 매매증명을 가져와라 이거야. 농지위원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종로바닥에서 어디 할 데가 없거든. 그렇다고 동장이 있지만 자기 업무가 아니거든. 또 지금 현재 있는 동장님이 그걸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이러한 부당한 어느 집주인의 이러한 것은 바꾸어 가지고

○地籍課長 徐燦奎 그것은 말이죠, 제가 지역경제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 과에서는 지역경제과가 농지에 관한 것을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의를 해서 개별 필지별로 숙제를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玄壽漢委員 지금 얘기하면 거기 직원들이 몰라. 원칙만 가지고 있지 원칙에 의해서 일을 하겠다 이거지. 그래서 현지에 나와봐라. 원칙만 고수하니까 지금 과장님이 그쪽 지역경제과장하고 합의를 해서 금년에는 또 내년에는 업무를 보고있었던 그 직원들이 알고 있지만 인사이동이 되어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런 원칙만 세우니까 애초에 그러한 것을 고칠 의향이 없느냐 그런 것을 여쭙보는 겁니다.

○地籍課長 徐燦奎 그것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개정건의도 하고 해서 그렇게 풀어나가도록

○玄壽漢委員 일이 그거라고.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地籍課長 徐燦奎 조치를 하겠습니다.

○玄壽漢委員 財務局長! 한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어느 과 지적을 안하고 아까 질문을 마저 하려다 말았는데 계약이 구청에서 발주하는 계약이 예를 들어서 1억 2,000이다 공사를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도 설계변경이 들어가죠. 또 추가로 부담이 되죠? 어느 공사를 하는데

○財務局長 董連浩 추가로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고 경감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설계변경에 의해서

○玄壽漢委員 총 공사비는 줄었든 늘었든 그렇지만 다시 한 번 설계변경을 할 때 설계비 들어가죠? 설계비를 지불하죠? 업무부서에서 설계를 하더라도 교량같은 것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교량공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들어서 설계변경이 몇번씩 들어가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애초에 공사계약금만 적어있으니까 그 부서에 가서 대조를 해봐야 어느 것이 얼마인지 낙찰 공사금액 감정가액만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는 그런데, 공사가 마무리가 됐는지 마무리가 안됐으면 연말에 어떤 총액이 공사비가 늘면 재무국장! 더 지불해야죠? 구에서 발주한 공사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그렇습니다. 더 지불해야 됩니다.

○玄壽漢委員 적게 든 것은 받아서 유입시키면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 금액이 이것이 결국은 타부서하고 최종적으로 맞춰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여쭙습니다. 애초에 낙찰이 예를 들어서 1억 2,000이면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가 늘었는지 어떻게 해서 5,000이 더 들어갔다 하면 총액은 1억 7,000이 되는 거죠?

○財務局長 董連浩 그렇습니다.

○玄壽漢委員 그런데 여기 자료는 우선 급한대로 10월 30일 현재 제출한 걸로 그렇게 보면 되겠죠?

○財務局長 董連浩 예.

○玄壽漢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玄壽漢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7分 會議中止)

(13時34分 繼續開議)

○委員長 安載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金福同委員님! 질의하십시오.

○金福同委員 오전부터 이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계장님들께서 너무나 수고가 많으신데 11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14쪽을 보면 '97년부터 5년동안 과오납에 대한 말씀을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시세가 있고 구세가 있는데 이렇듯 과오납이 많이 적체되어 있는데 이런 과오납을 더 받았으면 세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金福同委員 이것을 지금까지 많이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여기에 제시된 것은 최근 5년 동안에 연도별 발생한 과오납이고 실질적으로 안 돌려준 것은 찾아가지 않은 것은 1,336만 4,000원입니다. 최근 5년 동안을 다 합해서. 이나마라도 다 찾아가게 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공문도 발송하고 또 현재 과오납을 좀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과오납이 발생하신 분들에게는 구청을 오시지 않고 전화로 이러한 과오납이 발생했는데 계좌번호를 알려주십시오 해서 과오납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에게 계좌로 저희들이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찾아간 1,336만 4,000원의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어도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지고 지금 못 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金福同委員 문제는 우리 기관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보는데 우리가 돈 천원을 안 내면 압류를 합니다. 그렇죠? 천원도 가압류를 하지 않습니까? 전화압류를 하고 재산상의 가압류를 하고 심지어는 자동차에 압류를 하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더 실수로 인해서 더 받았다고 하면 과오납 받은 분들에 대해서 찾아가서 정중하게 몇년 몇월 며칠날 이러한 것으로 해서 우리가 더 받게 된 것인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다음에 이런 것을 직원을 보내서 호호방문을 해서 보내줄 용의는 없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런 사항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찾아가지 않는 미환불금은 대부분의 경우가 찾아가실 분들이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외국에 사신다든지 아니면 주소를 확인할래야 확인할 수 없는 주민등록말소자라든지 이러한 분들이 대부분이지 현재 저희들이 연락가능하신 과오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찾아가서라도 내드릴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金福同委員 만약에 몇년이 지나서 국고로 환수가 된다면 10년입니까? 7년입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5년입니다.

○金福同委員 과오납 5년이 지난 것은 국고로 환수할 확률이 많다는 얘기죠?

○財務局長 董連浩 예, 그렇습니다.

○金福同委員 이것은 문제점이 없지 않아 됩니다. 우리 세정행정에 있어서 유능하신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께서 열심히 잘 하는데 추후도 종로구민에게 이렇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제도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맞는 말씀입니다.

○金福同委員 국장님! '행복이 샘솟는 아름다운 종로'라고 그러죠?

○財務局長 董連浩 예.

○金福同委員 이렇게 해서는 행복이 샘솟는 아름다운 종로구가 아니죠. 단돈 10원이라도 우리가 받을 것은 눈을 부릅뜨고 받으면서 더 받은 것은 흐지부지하게 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金福同委員 이러한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알겠습니다.

○金福同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金福同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 때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가 준비됐습니까? 공사대장하고 조서하고 대화홍산 자료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세요. 자료 하나 더 와야죠. 위원님들! 다 받으셨죠?

○金福同委員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금년에 결손처분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향후에 얼마를 결손처분할 수 있는지는 지금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결손처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야야 최종적으로 얼마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는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10월말 현재로 해서 모른다는 말씀이죠?

○財務局長 董連浩 9월말 현재 결손처분한 게 1,719건에 9억 7,8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9월 이후 10월, 11월, 12월 3개월간에 걸쳐서 이것 말고도 더 결손처분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福同委員 자동차세 같은 것을 인하해주시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자동차세를 지금 줄여주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맞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는 연한에 따라서 세금이 점차적으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는 내년에 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특히 우리 종로구같은 데는 비과세 지역이 엄청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세원발굴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목록목록을 봐서 세원 확보하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金福同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하는委員 있음)

丁炳煥委員님! 질의하십시오.

○丁炳煥委員 오전 질의한 내용을 좀 비슷하게 보충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공개경쟁입찰이 117건에 왜 우리 종로에 거주하는 업체는 참여를 안 했느냐고 질의했고 또 수의계약에서도 111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로에서 수의계약한 것은 13건에 불과 12%밖에 수의계약을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111건을 했는데 같은 값이면 종로의 공사는 종로에 수의계약을 하지 왜 타지역에 입찰을 했느냐 아까 국장님 답변이 그것은 입찰경쟁에 의해서 그렇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왜 수의계약을 종로의 사람을 택하지 않고 타지역을 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주관부서는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종로에 소재한 업체가 배제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옹당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다만 최근의 공사를 발주하는 개개의 부서에서 그 당해공사를 최소한 경비로 가장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업체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종로구에 소재하는 업체가 아닌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 특정한 업체를 선정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봐서 종로구에 소재한 업체가 참여한 비율이 약간 저조한 것으로 丁炳煥委員님께서 판단하셔서 주신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향후에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종로관내 소재한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에다 제가 촉구를 하고 당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국장님! 답변이 종로에 소재하는 업체는 전부 부실공사를 하기 때문에 안하고 타지역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말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반드시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재무국장 입장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부서마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구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 종로구에 소재한 업체가 적음으로 인해서 丁炳煥委員님께서 하시는 걱정으로 생각하기에 이후에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종로구에 소재한 업체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부서에서 당부를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丁炳煥委員** 앞으로는 2002년도에 수의계약은 될 수 있으면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타당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우리 관내의 공사를 111건이나 했는데 우리 관내에서 13건밖에 수의계약을 안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2002년부터는 그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국장님 답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丁炳煥委員님의 질의가 종로구의 업체로 하여금 많은 수를 수의계약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위원님으로서 당연한데 과연 국장님 권한으로 종로구를 제한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財務局長 董連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주관하는 부서가 재무국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형태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로 하여금 종로구에 소재한 업체로 하여금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그것이 가능한 일이나고요?

○**財務局長 董連浩** 그것이 반드시 가능 안할 수도 있고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같은 상황이면 종로에 소재를 둔 업체가 참여하도록 하는 丁炳煥委員님의 걱정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委員長 安載弘**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吳弼根委員님! 질의하십시오.

○**吳弼根委員** 재무국장님! 그리고 여러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소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504개소가 있습니다.

○**吳弼根委員** 부동산중개업법 제22조 제23조에 의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보면 말이죠,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가 있죠? 흔히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고 6개월 이내에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31개조항이 있더라고요.

○**地籍課長 徐燦奎** 있습니다.

○**吳弼根委員** 그런데 2001년도에 지적과에서 단속 및 행정처분을 한 실적을 보면 총 580군데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을 해가지고 등록취소 다섯군데, 업무정지 14군데, 고발 2건, 시정 59건, 과태료 10건 등 총 90건을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을 보면 같은 업소에서 중복적으로 업무중지나 과태료 부과를 당한 업소가 8군데가 있어요. 맞습니까?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상습적으로 부동산중개허가를 이렇게 취소를 당하고 또 거기다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취소를 당한 업소가 8군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뭐를 보지 않고 내줘버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8군데 중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상습적으로 하는 곳은 등록취소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吳弼根委員** 여기 보세요. 거론은 않겠습니다마는 교남동 78번지 영업정지 1월, 또 교남동 78번지 23줄 보면 과태료 부과 20만원, 교남동 11번지 교남동 7번지 이렇게 업무정지 당한 데가 한군데서 두 번씩 있지 않습니까? 명륜2가에서도 여기는 4번을 그런 데가 있어요. 이것은 보지 않고

내줬다는 것 아니겠어요?

○地籍課長 徐燦奎 수수료 과다징수나 이런 것을 갖고 경미한 사항이 있어서

○吳弼根委員 경미한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를 보면 업무정지 6월, 고발 고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지 않고 신청만 하면 내줍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아닙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吳弼根委員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어요?

○地籍課長 徐燦奎 대표자가 달라졌습니다.

○吳弼根委員 같은 중개업소의 장소에서 고발을 당하면 다른 사람이 또 신청을 하면 내줍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건물주하고 건물에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중개업자한테 내주기 때문에 장소가

○吳弼根委員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그 업소에다 내줘 가지고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업자가 다른 사람 것을 갖다가 신청하면 된다는 그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地籍課長 徐燦奎 처분을 받고 나서 그분들이 폐업신청을 하거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부동산중개사무실 하던 곳을 사와 가지고 다시 허가를 낸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吳弼根委員 지적과장님! 지금 관내에 부동산업자들이 자기 명의를 가지고 영업을 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그래서 그건 저희가 이번에 점검하면서 신고를 받고 해서 여러 곳을 적발해서 철퇴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吳弼根委員 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50% 이상 자기 명의로 하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地籍課長 徐燦奎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吳弼根委員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개업하는 사람들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의 명의를 빌려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부동산법을 숙지를 잘 못해 가지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영업이 늘어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단속을 강화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地籍課長 徐燦奎 이사철에 특히 더 중점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吳弼根委員 제가 이번에 우리 관내의 아스콘공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빗물받이까지 전부 올려 가지고 공사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아스콘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토지대장에 '36년 6월 5일 소유권이전이 되고 '39년 3월 16일 지목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65년 정도 됐죠? 이런 땅들이 있기 때문에 아스콘공사를 못 한다고 그러는데 이 건 어떻게 된 겁니까? 한 65년 정도 됐으니까 그러면 입자가 없습니다.

○地籍課長 徐燦奎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을 겁니다. 옛날 저희 구 같은 경우 특히 더 한데 과거 택지개발공사나 아니면 대지분할을 해서 도로부분은 소유권이전을 안 하고 옛날 소유자가 나머지 부분만 다 소유권이전을 하고 그 분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거나 돌아가신 분들의 소유권이 아직 사도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吳弼根委員 이런 것을 그대로 놔둘 겁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개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개발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분들의 자손들을 찾아서 소유권이전을 하도록 하는 방법도 대행해봤습니다만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吳弼根委員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지적과에서 애를 한번 써봤습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그랬습니다. 소유권이 오래 된 것들

○吳弼根委員 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방법이 없습니다. 상속권자를 찾아야 되는데 찾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吳弼根委員 그렇다면 이런 도로가 30~40년 돼 가지고 그대로 도로로 놔 있는데 지금 도로가 전부 망가져 가지고 흠이 나오고 걸어다닐 수가 없어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럼 포장은 못 하겠네

요?

○地籍課長 徐燦奎 포장방법은 제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소유권에 관해서는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吳弼根委員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지적과에서 한시적인 무슨 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마냥 이렇게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地籍課長 徐燦奎 그건 도시계획시설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 부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安載弘委員 토지대장상에 소유주가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吳弼根委員 그러니까 소유권은 '36년 6월 5일 날 되어 있고 지목변경이 '39년 3월 16일 날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연고자가 없는 거예요. 그 연고자가 없는 것을 토목과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

○委員長 安載弘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잖아요. 사유지라 하더라도 측량이 잘못되거나 그래서 현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경우에 토지에 사용승낙서를 받으면 도로포장을 할 수 있고 저거 같은 경우는 무주공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업무 처리하는 규정은 없습니까?

○地籍課長 徐燦奎 공사하는 규정은 잘 모르겠는데요

○吳弼根委員 '50~'60년대의 부동산을 어떻게 법으로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우리 도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없느냐 이거예요.

○地籍課長 徐燦奎 소유권에 관해서는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공사시설 부서와 그것을 긴밀하게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별도로 제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님께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吳弼根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吳弼根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吳錦南委員님! 질의하세요.

○吳錦南委員 吳錦南委員입니다. 감사자료 69~73을 보시면 계약일자, 준공기한, 준공일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준공일자 안된 것을 보면 준공기한이 거의 다 금년 말입니다. 10월 30일, 12월 25일, 27일. 이렇게 발주를 9월에 했지만 준공기한도 12월 말까지 해놓으니까 월동기공사가 되거든요. 준공된 것은 불과 한 6~7개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거의 금년 12월 말 준공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꾸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과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에 공사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연초부터 모든 공사를 조기 착공한다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사를 주관하는 부서에 촉구를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국 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등 해가지고 조기 착공을 위해서 연말에 공사가 집중되므로 인해서 부실공사, 동절기공사가 되지 않도록 여러 번 당부 지시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각각 주관하는 부서에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를 들어서 발주가 늦어지므로 인해서 가지고 불가피하게 연말공사가 되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우리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개선을 해서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사료됩니다.

○吳錦南委員 신년도부터는 가능하면 발주를 빨리하고 빨리 마무리짓는 것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알겠습니다.

○吳錦南委員 다음 7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정기에금 예치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6월 12일 만기일이 2001년 6월 12일인데 2000년도 6월 12일 정도면 이자율이 떨어지지 않았을 정도의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그런데 그 이후에 한 것도 6.8%의 이자 올인데 왜 2000년도 6월 12일날 한 것은 4.9%의 이자율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財務課長 趙秀完 그것은 제가 별도의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吳錦南委員 79페이지 구유재산 주요건물에 화재보험이 들어 있습니다만 감사자료에는 미처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겁니다만 우리 자동차보험은 어느 한 보험회사에다가 일률적으로 넣습니까? 아니면 분산해서 넣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행정차량은 각 주관 과에서 합니다.

○吳錦南委員 고액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체납자에 한해서 금융재산 조회를 하십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하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럼 어디를 통해서 현재 조회를 하고 있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금융재산 조회는 불가피하게 금융기관의 절대적인 협조가 전제가 돼야 가능한데 구 단위에서 금융재산 조회를 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조회에 응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 전체에서, 서울시에서 각 구의 금융재산 조회분을 수합을 해가지고 해당되는 금융기관에 보내서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조회해 가지고 그 결과를 해당되는 구청에다 통보를 해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럼 구에서는 전혀 안 하고 시로 이관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걸로 해서 의뢰를 받아 가지고 합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우리 종로구에 소재한 금융기관에다 금융재산조회 의뢰를 했었지만 협조를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각 은행의 본점을 통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금융재산을 조회해서 해당되는 구로 통보해주는 그런 식으로 금융재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조회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죄송합니다. 잠시 기다려주시면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럼 나중에 말씀드리고 사실 법률상 영장이 없어도 금융조회를 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서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금융조사를 조회하고 있어서 개인신상의 노출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철저히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조금전 금융재산 조회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면 조회를 해가지고 예금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을 압류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9월말까지 790건을 예금에 압류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몇 건인가는 아직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회를 한 결과로서 예금에 압류한 건수가 790건입니다.

○吳錦南委員 압류한 다음에 개인별로 통보를 해 줍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그렇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반응이 안 옵니까? 압류한 이후에 대부분의 경우는 체납된 지방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한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나름대로 시를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금융기관에다가 금융자산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체납지방세를 징수하고자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금융기관의 비협조로 구 단위에서 조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 단위에서 하는 것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 체납자들이 개인신상을 노출했다 해서 어떤 항의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그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는 없었습니다.

○吳錦南委員 알겠습니다.

○財務課長 趙秀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安載弘 네. 財務課長! 말씀하세요.

○財務課長 趙秀完 아까 첫번째 있는 2억원짜리는 만기일이 2001년도 6월 12일입니다. 만기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금년 1년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만기일 중에는 계약된 금리를 주고 그 만기일이 지나면 현재의 이자를 줍니다.

○吳錦南委員 6.9%를 준다는 얘깁니까?

○財務課長 趙秀完 4.9%요.

○吳錦南委員 그러니까 왜 4.9%나 이거예요. 다른 것은 지금보다 이율이 높지 않습니까?

○財務課長 趙秀完 다른 것은 계약기간 중이거든요. 이것은 지났습니다. 기간이 6월달에 지났어요. 그래서 현재 1년 이자율을 주는 겁니다.

○吳錦南委員 그럼 이걸 다시 재계약을 안 하고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보통이자율이 나오는 거네요?

○財務課長 趙秀完 아니죠. 1년 만기예금 이자율이 나오는 거죠. 현재 이자율. 계약 당시의 6.8% 이것은 1년 만기율이 6.8%란 얘기고 그 만기일이 지나면 지난달부터 4.9% 현재 만기 이자율이 나오는 겁니다.

○吳錦南委員 그럼 이거 날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4.9% 문제는 그 가입일이 2000년 6월 12일이었고 만기일이 2001년 6월 1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 만기가 금년에 도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 지난 그 시점에 적용되는 변동금리는 4.9%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나머지 예치된 정기예금 경우의 사례가 죽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예치된 것이기 때문에 이율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4.9%는 6월달이 지나서 재계약을 한 금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吳錦南委員 그러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약날짜를 2001년 6월 12일로 다시 해야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6월 12일 이후에 다시 재계약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吳錦南委員 그 말입니다. 아까 金福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미납세금 및 결손처분 현황이라고 해서 2000년부터 2001년 9월 현재 이렇게 해서 현년도와 과년도도 죽 나왔습니다. 이것은 결손처분을 언제부터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이것은 9월말 현재 현년도와 과년도도 지방세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소재목으로 지방세 체납현황이라고 소재목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큰 제목이 미납세금 결손현황인데 108쪽에 가면 결손처분 현황이 별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8쪽에 나오는 숫자가 금년 10월말 현재로 미납세금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吳錦南委員 그럼 상당히 액수가 많네요?

○財務局長 董連浩 지금 도표에 보시면 10월말 현재 결손처분 합계가 시세, 구세 합해 가지고 6,500건에 15억 3,48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숫자를 제가 지금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전체적인 각 구별로 비교해봤을 때에는 크게 높은 숫자는 아닙니다. 각 구별로 규정에 합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구에 비교해서는 크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吳錦南委員 많은 것은 아닌 게 아니라 15억이면 상당히 큰 거죠? 그러면 111쪽 감액처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財務局長 董連浩 감액한 사유 중에서 국세가 감액됨에 따라서 지동적으로 우리 지방세가 감액이 된다든지 소송에 의해 가지고 패소를 해서 감액이 된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은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만 이중 부과를 했다든지 착오부과를 했다든지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신중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연간 각 세목별로 부과하는 게 수 십만 건 됩니다만 그렇더라도 각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각종 과세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착오 부과나 이중부과 같은 이런 잘못이 없어야 됴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생기게

된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을 해야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吳錦南委員 거기 보면 패소 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승소는 없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아니 예를 들어서 승소만 했다면 감액을 해야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패소한 경우만 여기에 감액이 되기 때문에 패소한 감액사유만 기재를 했고 승소한 것은 부과한 것 자체가 당연하기 때문에 통계숫자에는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吳錦南委員 그렇다면 작년도의 소송건수하고 패소건수, 금년도 10월말까지의 건수에다가 소송해서 패소한 건수를 자료를 주세요.

○財務局長 董連浩 알겠습니다.

○吳錦南委員 조금 전 金福同委員께서 말씀하신 과오납 연도별 현황 최근 5년간이란 것이 114쪽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97년도 것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 위에 죽 보면 연도별로 있습니다. '98년도에도 미환금액이 있고 '99~2001년도 죽 합쳐보면 이 과오납의 연도별로 볼 것이 아니라 통계로 보면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착오가 있겠습니까만 가능하면 이런 것은 축소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더 말씀해주시죠.

○財務局長 董連浩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찾아가지 않은 환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세금을 부과할 때 과세자료를 준비하고 착오부과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환급에 대해서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98페이지 호화주택에 대한 지방세 부과는 현재 거의 100% 수납이 되고 있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가능하면 제가 답변드리려고 합니다만 세무1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安載弘 네. 그러세요.

○稅務1課長 趙朝翼 답변드리겠습니다. 호화주택의 기준이라고 하면 저희 지방세법에서 단독주

택의 경우 100평이 넘으면서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호화주택이라고 하고 또한 대지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면서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75평을 초과하는 경우가 호화주택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호화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은 거래될 때 취득세가 일반 세율이 5배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취득세하고 관련된 거고 그 다음 우리 구에서 취득세는 물론 시세입니다. 저희 종로구 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별도로 증가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 시가표준액이 1,300만원부터 단계별로 요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 현재 여기 보시면 취득세 14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호화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 전부 신고가 돼서 취득세를 5배로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吳錦南委員 거의 수납이 됐다는 얘깁니까?

○稅務1課長 趙朝翼 그렇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리고 조금 전 상반기 시민만족도 평가에서 우수 구로 선정돼서 시상금으로 3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만족도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노력하신 우리 직원분들한테 시상금이 부여돼서 활용하셨습니까? 아니면 구에 구세로 그냥 편입이 됐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상금으로 받은 3억원은 우리 구 전체에서 용도에 따라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 중 일부로서 저희 재무과에 환경개선을 하는데 약간에 소요가 됐었습니다.

○吳錦南委員 이러한 시민만족도평가라든지 기타 다른 분야에서 우수구로 선정돼서 시상금을 받아서 활용하는 것은 잘 하신 일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吳錦南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吳錦南委員께서 98쪽에 호화주택 공사에 대해 질문을 드렸더니 우리 趙朝翼 세무1과장이 자세히 답변을 잘 해주셔서 그것과 관련지어 질문을 드릴게요. 자료에 보면 2000년도에

재산세 부과한 것이 177건이었는데 2001년에는 173건으로 4건이 줄어들었으며 종합토지세 부과가 185건이었는데 실제로 2001년에 와서 180건으로 줄었던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稅務1課長 趙朝翼** 세무1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조금 전에 호화주택의 기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자료를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는 단독주택의 경우에 연면적이 100평이 넘어가는 것, 토지면적이 200평 초과되면서 과표 2,500만원 초과되는 것, 연립주택,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75평 초과하는 그런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를 동별로 뽑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치가 과세표준액이 다운되었다든가 예를 들면 예시를 들겠습니다. 200평이 넘었는데 그 지역에 건물이 헐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을 수도 있고 2,500만원 시가가 안됐었는데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러한 수치로 해서 자료가 나온 수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 177건, 173건은 내역별로 정확하게 안봤습니다마는 수치상으로 그런 변경이 있었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그렇게 추산하는 거죠? 趙朝翼課長 말씀은 수치가 조정이 됐을 거라고 지금 답변하신 거죠?

○**稅務1課長 趙朝翼** 내역별로 구체적으로는 제가 수치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화동에 2001년도에 부과된 것이 2건이 감소됐고 종토세하고 감소가 됐거든요. 건수가 적으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볼까요?

○**稅務1課長 趙朝翼** 예.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제가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체납과 관련지어서 세무1과, 2과에서 위생과나 소위 인허가 담당부서로 소위 이 사람이 체납을 하고 있으니까 인허가를 제한하라는 통지를 보낸 것이 나와있는데 110쪽에 나와있네요. 세금 체납에 의한 허가 등의 제한 및 취소요구 현황 해냈는데 2001년도 10월하고

2000년도에 있는데 2001년도에 꽤 많은데 2,397건 관허사업제한 이게 내용이 뭐예요?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세금체납에 의한 허가 등의 제한 및 취소요구 현황 중에서 관허사업제한 이런 게 2,397건이거든요.

○**財務局長 董連浩**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금체납에 의한 허가제한에 해당되는 세목의 대부분은 면허세에 해당되는데 각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특히 환경위생과가 많겠습니다마는 그런 부서에다가 체납된 사실을 통보를 하고 관업을 제한하도록 저희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2000년에는 1,657건이고 2001년에는 2,397건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예, 그렇습니다. 미처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배포를 못해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준비된 자료를 보니까 환경위생과 같은 데가 1,174건, 문화진흥과 782건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111건 해가지고 대응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민행정위원회 감사자료 맨끝쪽 302쪽을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답변한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1년 관허사업제한 요구사항 이래서 인허가 제한으로 인해서 체납처분한 내용 자료 해서 '99년, 2000년도에는 실적이 한 개도 없어요.

○**財務局長 董連浩** 그런데 위원장님! 시민행정위원회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같은 구청 내에서 재무부서에서 관업을 제한해 주도록 체납지방세 때문에 요청을 했지만 관업을 제한한 실적이 없다고 어느 특정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한 그 내용은 세무부서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별도로 응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委員長 安載弘**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재무국 세무1·2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제한을 하고 있으니 해당부서에 협력을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

생과는 1,174건, 문화진흥과는 781건, 지역경제과는 114건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위생과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한 개도 없다. 2001년에는 52건이 있다. 이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사실은 재무국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면 그쪽에서도 열심히 허가제한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취소를 하거나 같이 보조를 발맞춰 나가야 하는데 전혀 안된다는 거죠.

○**財務局長 董連浩** 아주 당연하신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제대로 공조가 잘 안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金福同委員님! 질의하십시오.

○**金福同委員**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좀 불충분하니까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낱낱이 찾아서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 감면 처리현황에 대한 사유를 묻겠습니다. 아까 111쪽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감면처리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감면처리가 됐습니까? 내용이 다 있습니까마는 착오부과를 한 것이 나오죠. 112쪽에 보시면 착오부과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네요. 거기에 보면 소송패소로 해서 원인무효로 해서 손해를 많이 봤고 유형별로 보면 어떻게 이러한 착오가 많이 나고 있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조금 전에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단 한건도 착오부과나 이중부과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십만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대처를 하지 못해서 이러한 착오부과가 이중부과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후에는 단 한건도 착오부과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하고 또 과세자료를 충분히 수집을 해서 완벽하게 세무행정을 구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국장님! 첨단기술을 가지고 컴퓨터시대입니다. 컴퓨터로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컴퓨터도 이렇게 많이 착오를 일으키는지 모르겠습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컴퓨터가 착오를 일으키는 것

이 아니라

○**金福同委員** 컴퓨터는 잘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사람이 시키는 대로 컴퓨터가 움직이지 컴퓨터가 무슨 독창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金福同委員** 우리 직원들이 컴퓨터에 잘못시켰구만. 그렇죠? 컴퓨터가 나쁜 놈의 컴퓨터구만. 우리 종로구민들을 이처럼 괴롭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내기도,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세금 한번 냈는데 한번 더 괴롭히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고 여기 소송제기를 해서 소송패소한 걸로 해서 우리가 손해를 많이 봤죠? 금액이 얼마입니까? 시세나 구세 해서 꽤 많이 손해보고 있잖아요? 가 급적이면 소송제기라든가 이러한 것을 떠나서 최소한 아름다운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 노고가 많은 직원들에게 찾아가서 소송을 하지 않고 대화로 풀어서 하는 쪽으로 했으면 이러한 손해가 없지 않았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전적으로 金福同委員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金福同委員** 이러한 것을 철저히 챙겨서 다가오는 2002년에는 이러한 일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金福同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吳弼根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吳弼根委員** 2001년도 매각 체납현황을 보면 국유지가 32건, 사유지가 2건, 구유지가 17건이 있었는데 잠종재산 매각시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반대의견은 없었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몇쪽을?

○**吳弼根委員** 20쪽입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각종 잠종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경우에는 공

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반대의 견도 일부 있고 찬성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론은 항상 만장일치로 결론이 도출이 돼서 의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건건별로 어느 분야는 반대가 어떻게 있었고 어느 분야는 찬성이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吳弼根委員 회의록은 기록된 것이 있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회의록은 나름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吳弼根委員 그리고 여기를 보면 국유지 매각대금으로 해서 구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국유지는 한 13% 내지 20% 이렇게 나와 있고 사유지는 30%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적용하는 비율이 각각 다릅니다. 국유지를 매각했을 때 저희 구에 들어오는 수수료하고 사유지를 매각했을 때 저희 구에 들어오는 수수료의 적용하는 비율이 각각 다릅니다.

○吳弼根委員 국유지의 매각 구수입이 틀리는데요. 20%가 있고 13%가 있고 그러는데요.

○財務局長 董連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국유지를 매각했을 때 구에 수입이 되는 수수료의 적용비율이 매각했을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30%에서 20% 사이를 우리 구 수입으로 그런데 여기 대부분 국유지를 관리함에 있어서도 매각대부변상금 수입 이러한 게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수입의 경우는 30%에서 50%, 변상금의 경우는 30%에서 40%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각대금을 주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프로테이지 범위 내에서 재산을 국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총괄부서에서 그 범위 내에서 정산을 해서 저희 구에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사유지의 경우는 시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吳弼根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2001년 국유지 매각현황을 보면 20쪽에 1번 한번 보세요. 내수동 70-44번지 대한주택공사에서 매각을 했는데 매각금액이 1,294만 9,000원이거든요. 그런데 구수입이 259만원입니다. 그러면 20%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30%에서 50%, 30%에서 40%

○財務局長 董連浩 아니, 매각의 경우는 20%에서 30% 비율 내에서

○吳弼根委員 그러면 그 밑에 보세요. 13%밖에 안됩니다. 133만 4,000원이 구수입이 되고 매각대금은 1,000만 4,000원인데 들쭉날쭉 하잖아요.

○財務局長 董連浩 무악동 재개발조합의 매각된 것은 다른 지역의 매각되는 것하고는 경우가 달리 적용된 것 같은데

○吳弼根委員 4번을 보세요. 4번을 봐도 거기 13%밖에 안되요. 5번도 13%밖에 안되고

○財務局長 董連浩 이것은 양해하시면 이 사항을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吳弼根委員 그래요? 19쪽을 보세요. 대부분 및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변상금 부과에 '99년도에 4억 6,000만원 부과에 징수가 3억 1,300만원 68%였거든요.

○財務局長 董連浩 지금 19쪽 말씀하십니까?

○吳弼根委員 국유지 대부분 및 변상금 징수현황 두번째 대부분 변상금 부과 현황을 보면 '99년도에 변상금을 4억 6,000만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3억 1,3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68%의 징수율을 보였고 2000년도에 변상금은 6억 4,200만원이었고 징수가 3억 9,000만원으로 61%였어요. 그렇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예.

○吳弼根委員 그런데 2001년도 변상금이 10월말 현재 2억 9,000만원 부과에 1억 1,100만원이 징수되었거든요. 그것이 38%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세목보다 징수율이 저조한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데 따른 문자 그대로 변상금입니다. 그래서 이 변상금의 징수가 사실은 다른 일반 세금의 이러한 것보다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99년도에는 징수율이 68% 또 2000년도에는 61%였고 금년에는 38%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 38% 되는 것은 향후 여기에 나온 통계는 10월말이니까 이후에 11월 실적도 있고

○吳弼根委員 지금 징수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최근년도에 이것이 체납화 되어 가지고 징수가 되기 때문에 년도가 오래 지날 수록 지난해에 체납된 것을 금년에 징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가 오래될수록 징수율이 높아지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吳弼根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국유지 2000년도 변상금 부과가 3억 1,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징수는 2억 8,400만원 해서 90%가 됐어요. 국유지는. 그런데 시유지는 1억 5,381만원에 징수는 571만원 정도 됐거든요. 시유지는 징수율이 높는데 국유지는 90%이상 되는데 시유지는 37%밖에 안 되는 이유는 뭐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건수를 보면 아시겠지만 시유지의 경우는 26건 중에 25건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부과한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건이 체납됨으로 해서 징수율이 낮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安載弘 그러면 변상금에 대해서 吳弼根委員님이 질의하고 계시는데 시유지가 26건 부과에 징수가 25건인데 한건이 무려 1억 5,000만원 정도를 체납하고 있다는 얘인데

○財務局長 董連浩 한건이 매우 규모가 큰 시유지를

○吳弼根委員 한건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체납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한건이 무엇인가는 잠시 후에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뒤에 직원들은 국장께서 답변하시면 그 부서의 담당직원이잖아요.

○財務局長 董連浩 바로 제가 지금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건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인사동 입구에 보면 새마을지회 서울시지부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

회 서울시지부가 그 건물을 사용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마는 변상금을 한 번도 안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시유지에 따른 변상금이 이렇게 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변상금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을 사유 승인할 때 당사자가 사용자가 소위 계약하지 않고 점유해서 사용할 때 변상금을 120% 매기는 거 아니에요?

○財務局長 董連浩 그렇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0%를 부과했는데 지금 이것이 변상금 국유지, 시유지, 공유지 해서 이렇게 많은 이유가 다 그렇게 확률적인 또는 그야말로 조건이 안좋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財務局長 董連浩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시유지의 변상금의 경우 인사동 입구의 서울시 새마을지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변상금의 경우에는 아주 악성 체납변상금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에 대해서 성격을 잘 아시겠습니까는 새마을단체에서는 각종 우리 관공서 건물을 쓰면서 대부분이나 이런 걸 안내고 써왔던 과거의 관행에 비춰 가지고 이것도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오랫동안 체납을 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吳弼根委員 새마을 시지부에서 안 주면 못받겠네요?

○財務局長 董連浩 변상금과 관련해서 새마을 시지회가 들어가 있는 건물이 위험건물로 판정이 돼서 지금 헐어야 할 상황입니다. 철거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새마을 시지회가 다른 건물로 이전을 해했습니다.

○吳弼根委員 돈을 못 받고?

○財務局長 董連浩 그래서 이전해간 건물에 대해서 체납된 변상금을 압류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吳弼根委員 압류를 하십시오.

○財務局長 董連浩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국유재산 변상금이 많은 것은 지금 대부분이 변상금이 확실히 더 많단 말입니다.

구유재산이 되었던 국유재산이 되었던 구유재산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변상금이 많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변상금이 많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각종 국유가 됐든 구유가 됐든 제대로 관리한다면 변상금이 많이 발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가지고 대부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면 변상금 부과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대지나 건물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변상금을 내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대부계약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맺을 수 없는 그런 여건에서 사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를 하지 않고 무단 사용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의 경우에 대부료보다는 훨씬 많은 변상금을 물고서까지 그것을 비정상적으로 쓰려고 하는 단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은 못드리지만 아마 특수한 연유가 있기 때문에 변상금을 물고서라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安載弘** 자료를 보면 전년도보다는 줄었다는 말입니다. 10월말 현재로 봐서 약 40건 줄었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財務局長 董連浩** 양해하시면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財務課長 趙秀完**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대부료의 관계는 일단 대부료는 적법하게 허가를 얻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체납이 되었다면 다음 대부계약이 체결이 안됩니다. 바로 변상금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용지, 잡종재산

○**委員長 安載弘** 정상적으로 계약을 했는데 대부료를 납부 못하면 계약이 유효한 범위 내에서 연체료만 물면 되잖아요. 지금 변상금이라는 것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에 무는 거잖아요?

○**財務課長 趙秀完** 그렇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그러니까 대부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한 건수와 변상금 부과건수를 놓고 볼 때 구유재산의 경우에 대부료를 2000년도에는 부과해서 9건을 받았고 2002년 10월에는 5건을 부과해서 5건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2000년도에 만료된 게 있고 2001년도에 만료된 게 있고 다르겠지만 그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財務課長 趙秀完** 지금 보시는 자료에 의해서 2001년도분 10월말 현재입니다. 11월, 12월 정기분이 나가고 부과되는 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11월, 12월달에 다시

○**委員長 安載弘** 변상금을 부과한 것도 2000년에는 197건이 됐다가 2001년에는 약 40건이 줄었나요?

○**財務課長 趙秀完** 그것은 부과가 될 것입니다. 11월, 12월에 예고서가 나가 있고 부과가 될 겁니다.

○**委員長 安載弘** 40건이?

○**財務課長 趙秀完** 예.

○**委員長 安載弘**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렇게 길게 설명하셨고 과장님도 설명하시고 저도 길게 얘기가 되는데 변상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되도록 끌고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재산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재무과장이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을 렌트하거나 대부를 하거나 어쨌거나 유효하게 성립시키는 일이 옳은 일이지 변상금 받으면서 계약을 불법하게 끌고 가는 일이 옳은 일이나 그거죠.

○**財務課長 趙秀完** 위원장님 말씀이 정당하고 옳으신 말씀인데 이게 하다 보면 일단 변상금을 내고 쓰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납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적법하게 주지 못할 경우도 있는 것이고 무단 점유한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체납한 것이 있으면 체납한 것을 갖고 계약을 하라고 저희가 연초에 홍보를 합니다. 홍보문을 다 보냅니다. 또 대부자한테도 대부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교환하십시오 해가지고 안내문을 매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변상금을

내는 경우에 기 부과한 변상금 자체가 변상금이라는 것이 세금하고 틀려 가지고 1000분의 5 상당히 높은 금액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100분에 120인데 20을 더 내게 되는가요?

○財務課長 趙秀完 상당히 많은 금액을 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도 설명을 드리겠는데 보통 국유지나 공유지나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보면 영세민들은 크게 점유하고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조금뿐이 점유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옛날에 국유지에 무조건 집을 짓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 변상금에 대한 징수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地籍課長 徐燦奎 저희도 국유지 같은 것도 이게 잔여토지가 1평이나 반평 이런 것이 담장 밑으로 들어가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한 절반 정도는 종로5~6가 정도까지는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나가봐서 측량을 해서 다시 국유지로 확정을 해가지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로 해가지고 적어도 잠종재산에 대한 현황책자를 도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께도 드리고 우리가 상담용으로 비치도 하고 해서 그걸 확정을, 누가 보더라도 이건 공유지다, 국유지다 확정을 짓게끔 내년에는 지도책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서 되도록 이면 많이 대부계약을 맺도록 조치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래 가지고 그 위에 보면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소규모 100평 미만의 구유재산 현황이 죽 나오거든요. 이런 거를 말하자면 이런 건수들이 부과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매각하든지 그 토지가 불필요한 토지라면 매각을 해버리든지 그래 가지고 변상금을 물지 않게, 변상금을 묻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국유재산법 위반행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없애도록 하시고 혹시 재무과에서 우리가 산림청의 토지를 무단 점유해 가지고 테니스장을 만들어서 변상금 부과판정을 받아 가지고

2000년도에 변상금 부과통지가 온 적이 있는데 그걸로 해서 변상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그 사항은 저희 재무국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서 그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변상금을 해당 공무원이 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어차피 종로구청에서 물어야 하잖아요?

○財務局長 董連浩 그 내용도 잘 모르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알겠습니다. 그럼 개인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 과감히 매각해도 되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매각을 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필요한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이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위원장님께서 변상금을 자꾸 물리게 하는, 대부계약을 해가지고 대부로 돌리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을 하시는데 대부계약을 하는데 따른 조건들이 이를테면 변상금을 내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체납된 변상금을 다 내야 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과거에 체납된 것을 다 납부를 해야 대부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 때문에 대부계약을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그 비정상적이고, 그게 국유재산법 위반 아니에요? 51조에 변상금을 물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국장님 얘기대로 주민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 끌어간다고 해서 계속 변상금만 받고 처리를 안 한다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한다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거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변상금이란 게 이렇게 대부로 보다 많아서 안 된다고 봅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맞는 말씀입니다. 애초에 무

단으로 점유를 할 수 없도록 우리가 국공유지재산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과감하게 매각을 하든지 정상적으로 체납된 것 받고 해서 대부를 하든지 처리하도록 하세요.

○**委員長 安載弘**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감사를 갔더니 우리 구 재무회계처리규칙과 다른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배정하면 예를 들어서 그게 이런 예가 있었어요. 짧게 답변해주세요. 노인잔치경비로 예산이 배정돼서 집행을 하는데 주민문화복지위원회가 그 예산 전액을 입금시켜주고 그 주민문화복지위원회로 하여금 집행을 하게 한 다음 정산을 하는 게 종로구재무회계규칙에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부녀회 통장으로 그 예산을 넘겨줘 가지고 그 새마을부녀회로 하여금 그 예산을 사용하게 하고 정산서를 받는 게 재무회계규칙에 맞습니까?

○**財務局長 董連浩** 그것을 새마을부녀회나 문화복지위원회에 현금을 쥐 가지고 정산토록 하는 것은 잘못된 처리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집행은 당연히 동장이 해야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委員長 安載弘** 그런데 동별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느 동에 갔더니 주민문화복지회로 넘겨서 집행하게 하고 어느 동은 새마을부녀회가 집행하고 어느 동은 동장이 직접 집행을 하고. 그러니까 회계가 이렇게 통일되지 않는 기본적인 이유는 동의 서무주임이 됐든 회계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된 회계예규나 조례나 업무처리 지침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시정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그리고 수의계약 공사와 관련해 재무국에서는 지출만 할 따름인데 현실적으로

담당과에서, 주관과에서 준공검사나 그런 게 올라오면 그것에 따라서 지불만 할 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 공사내용과 관련해 돈을 주는 곳이 재무국이고 재무과니까 적어도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재무과 공무원이 입회해서 도장을 찍어야만 제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준공조서가 됐든 물품구매가 됐든 재무과 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사와 관련지어서도 부당한 하도급이나 부당한 일들이 없도록 관련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董連浩** 알겠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다음 지적과인데 관련자료 120쪽을 보면 부동산중개업 등록신청이 220개소로 되어 있어요. 2001년도에. 그런데 이 숫자가 현재 종로구에 산재해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총수는 아니잖아요?

○**地籍課長 徐燦奎**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등록, 폐업, 휴업, 장소이전, 등록증 교부를 합친 숫자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그러면 현재 종로구 부동산중개업소의 수는 몇개예요?

○**地籍課長 徐燦奎** 504개입니다.

○**委員長 安載弘** 그러면 부동산중개업 위반단속실적이 2000~2001년 10월 현재로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 단속건수가 580개예요?

○**地籍課長 徐燦奎** 그것은 지금 교차단속을 하면서 두번씩 나간 데가 있어서 숫자를 합쳐놔서 그렇습니다. 504개 업소가 있는데 1회씩하면 504개만 단속한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기나 민원이 있는 데를 두번씩 나가서 그렇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그러니까 580건은 누진된 단속 숫자라 그 말씀이시죠?

○**地籍課長 徐燦奎** 그렇습니다.

○**委員長 安載弘**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오늘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董連浩 財務局長님! 課長님! 그리고 직원 여

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재무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모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03分 監査終了)

○出席委員 8人

安載弘 吳弼根 吳錦南 玄壽漢
丁炳煥 劉燦鍾 李炯述 金福同

○出席專門委員

蔣昭秀

○出席關係公務員

財務局長 董連浩
財務課長 趙秀完
稅務1課長 趙朝翼
稅務2課長 徐明一
地籍課長 徐燦奎

